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30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이길수, 이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박재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다희, 김민수, 홍민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2. 1.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3616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2. 17. “C는 원고에게 7,107,167원 및 그 중 4,434,196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을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D는 2022. 1. 14.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E(상속지분 3/7)와 자녀인 피고, C(상속지분 각 2/7)가 공동 상속하였다.

다. E, 피고, C는 2022. 6. 23. D 소유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는 D로부터 이미 자신의 상속지분 이상의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가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해 본다. D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고, 그 가액이 75,000,000원인 사실, D는 2010. 1. 1.부터 2017. 8. 8.까지 C에게 171,922,036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017. 12. 4.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가 생전에 C, E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액수 및 지급 시점,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로서 특별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75,000,000원에 C의 특별수익 171,922,036원과 E의 특별수익 50,000,000원을 합한 296,922,036원에 C의 법정상속분 2/7를 곱하여 산출한 84,834,867원(원 미만 버림)에서 C의 수증재산인 171,922,036원을 공제하면 결국 C가 D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 된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분할협약을 통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승이

별지